

# “제가 집주인을 만나고 나서도 아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?”

“아파트를 보려고 했으나 집주인이 제 아들과 저를 보고 나서는 그냥 가버렸습니다. 집주인을 따라가 물어 보니 아파트 임대가 이미 끝났다고 말했습니다.”



인종 또는 가족 조건으로 인한 차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 주택 거래 시 차별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실 경우 주택도시개발부 또는 여러분 지역의 공정주택거래센터에 연락해 주십시오.

**www.hud.gov/fairhousing** 에 방문하시거나 주택도시개발부 핫라인 **1-800-669-9777** (음성) **1-800-927-9275** (TTY)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**당신의 선택, 당신의 권리, 당신의 집입니다.**



미주택도시개발부와 전국공정주택거래연합이 함께 하는 공익 메시지입니다. 연방 공정주택거래법은 인종, 피부색, 종교, 국적, 성별, 가족 조건 또는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[www.hud.gov/fairhousing](http://www.hud.gov/fairhousing) 을 참조하십시오.

**NFHA**  
National Fair Housing Alliance